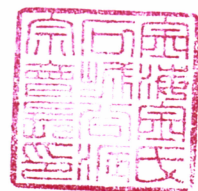


定 款

金海金氏石城公派宗會



第一章 總則

제1조 : 명 칭

본회는 金海金氏石城公派宗會라 칭한다.

제2조 : 사무소

본회의 사무소는 서울 特別市에 둔다.

(단, 부득이 한 경우 서울 특별시외에 둘 수도 있다.)

제3조 : 목 적

본회는 선조를 숭봉(崇奉)하고 종족(宗族) 간의 친목(親睦)과 번영을 도모함을 목적(目的)으로 한다.

第二章 會員

제4조 : 회원의 자격

본회의 회원은 金海金氏石城公派(과조:永字純字)의 후손으로 한다.

第三章 任員

제5조 : 임 원

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
1. 회장 1인(이사)
2. 부회장 20인 이내(수석 부회장 1인 포함 : 이사)
(단, 수석 부회장은 차기 총회장으로 선임한다.)
3. 사무총장 1인
4. 이사 40인 이상(이사로 함은 각 문중 대표로서 世字應字, 世字輔字, 世字發字, 世字汀字, 世字彦字, 문중에서 안배한다.)
5. 감 사 2인

제6조 : 고문 추대

덕망이 높고 본회 발전에 공헌한 사실이 현저(顯著)하거나, 특히 모범이 될 만한 종원(宗員) 중 고문을 회장이 추대하고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한다.

제7조 : 임원의 선출

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위촉한다.

수석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이사인 문중대표의 선임은 총회의 결의로 회장에게 위임하여 문중별로 안배하여 선임 할 수 있다.

(단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)

제8조 : 임원의 임기

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어떤 경우이든 회장은 연임(連任) 할 수 없다.

(단, 1) 결원(缺員)으로 인한 보선(補選)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2) 단, 회장유고시는 자동 수석 부회장이 승계하여 승계 기간을 차기로 보아 1회에 한하며 연임 할 수 있다.

3) 보선은 확대 집행부 회의(회장단, 사무총장, 감사, 이사인 문중대표)에서 한다.

제9조 : 임원의 임무

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, 이사회, 기타 회의의 의장이 된다.
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 시 그 직을 수석 부회장이 대행한다.
수석 부회장이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할 시 부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그 직을 대행한다.
3. 사무총장은 일반 업무 및 모든 행정을 담당한다.
4.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의결한다.
5. 감사는 업무 및 재정과 행정을 매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 한다.

第四章 事業

제10조 : 사 업

1.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
 - 1) 위선사업(爲先事業)
 - 2) 부종사업(扶宗事業)
 - 3) 계도사업(啓導事業)
 - 4) 파보발간사업
 - 5) 書院및齋舍 신축등 관리에 관한 사업

第五章 總會

제11조 : 총회의 구성

총회는 제4조의 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12조 : 총 회

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
1. 정기총회는 매년 4월에 회장이 소집 한다.
2.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시 또는 이사 1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 한다. (단, 이사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회장이 불응 할 시는 요구자 대표가 소집 할 수 있다.)

제13조 : 의결 정족수

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(단, 정관개정, 재산처분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4조 : 총회의 의결사항

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- 1) 정관의 개, 폐.(단, 정관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기구에서 안건 상정심의 결과 승인, 개폐, 의결 된 것을 총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.
- 2) 예산, 결산의 접수
- 3) 기타 본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

第六章 理事會

제15조 : 이 사 회

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.

- 1) 이사회 의결기구라 함은 안건상정, 심의 결과 승인을 청한다.
(단, 고문,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.)

제16조 : 이사회의 소집

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이사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. (사무총장은 회20일 전에 통보한다.)

제17조 : 이사회의 의결사항
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한다.

- 1) 본회 운영상 필요한 제반사항
- 2) 안건 상정, 심의결과 승인, 개폐
- 3) 의결 된 것을 총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.

(단,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시는 총회를 대신할 수 있다.

제18조 : 의결 정족수

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第七章 財産및會計

제19조 : 재 정

본회의 재정은 헌성금(獻誠金) 및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
제20조 : 운 영 비

본회의 운영비(運營費)는 전조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21조 : 회계연도

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 말일까지로 하고 결산 이월금은 다음회계 년도로 이월한다.

제22조 : 예산 및 결산

본회의 예산 및 결산은 회장이 매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, 승인 받도록 한다.

第八章 賞罰

제23조 : 시상 및 징계

본회 회원(종원)으로서 宗事(종사)에 헌신적이고 본회 발전에 지대(至大)한 공헌이 있는 문중 또는 회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결의에 의하여 시상하고 본회의 위상을 손상하게 한 회원은 집행부 결의에 의하여 징계 할 수 있다.

(단, 시상규모 : 은수저 1벌 기준, 종회장 : 전별금 없음)

附 則

제1조 : 본 정관(회칙)은 1988년 3월 14일부터 시행 한다.

제2조 : 1→5차 개정 시행일 기재 생략.

제3조 : 이 정관은 2009년 4월 26일부로 시행 한다.

제4조 : 이 정관은 2018년 이사회 의결 기구에서 일부개정 8월 21일부터 시행 한다.

회 의 록

1. 일시 및 장소 : 2018. 4. 20. 11시 영등포 우체국지하 더샤브식당
2. 회 의 명 칭 : 김해김씨 석성공파 임시 임원회의
3. 참 석 인 원 : 김병철, 김영환, 김중겸, 김재섭, 김부겸, 김재선, 김재호, 김무겸.
4. 안 건 : 회장(대표자) 선임의건 (임시의장 : 김병철)

“임시 의장 김병철”

- 1) 의장 김병철은 성원보고에 이어 김영환 회장의 임기 전(임기만료 2019.4.20.) 개인 사정에 따라 회장을 사임 코 저 함을 설명하고 후임 회장을 추천하여 주실 것을 설명함과 동시에 후임 회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음. 이에 김재섭은 후임회장으로 (잔여기간 2019. 4. 20까지) 김중겸을 추천하였다.
이때, 회장은 또 다른 사람이 없느냐고 물으니 전원 없다고 하였음.
- 2) 이에 의장은 그 동안 종회 발전에 헌신하시고, 또한 회장으로서 책임을 다 할 것으로 사료 되는바 회장으로 선임함을 설명하고 찬, 반을 물으니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임시의장은 신임회장으로 김중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하다.

(회장 인적사항 김중겸 440809-1812329)

- 3) 의장은 다른 안건이 없느냐고 물으니 전원 다른 안건이 없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.(이때 시간은 12시였다)

참석임원(무순) : 김 병 철

김 영 환

김 중 겸

김 재 섭

김 부 겸

김 재 선

김 재 호

김 무 겸

김해김씨 석성공파 종회



회 장 취 임 승 낙 서

인적사항

1. 주 소 :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1218. 114동1003호
(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)
2. 성 명 : 김 중 검 (440809-1812329)
3. 명 칭 : 김해김씨 석성공파 종회
회 장 김 중 검

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으로 선임 되었으므로 종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
저 취임을 승낙 합니다.

2018. 4. 20.

김 중 검
(010-3762-2056)



김해김씨 석성공파 종회 귀하

고 유 번 호 증

고유번호 : 109-80-18508

단 체 명 : 김해김씨석성공파총회

대 표 자 성 명 : 김중겸 생 년 월 일 : 1944 년 08 월 09 일

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18, 114동 1003호(방이동, 올림픽 선수,기자촌 아파트)

발 급 사 유 : 대표자변경



(유의사항)

- (1) 이 「고유번호증」은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하여 법인 아닌 단체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부여하는 등록번호입니다.
- (2)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2018 년 05 월 31 일

잠 실 세 무 서 장

